작품의 ‘원본’과 그 ‘복사본’의 구별을 위한 용어와 개념 정리

2.26 홍익대 홍문관

판화, 용어의 정리와 범위의 구분을 공론화하며

2월 26일 한국현대판화가협회(이하 현판)가 주최한 회의가 홍익대학교 홍문관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에는 윤동천 서울대 서양화과 교수, 이순심 한국사진학회 부회장, 이은주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사, 임영길 현판 회장이 참여했다.

본 회의의 목적은 “예술작품의 복사본(한정판 고급 복제물)이 원본인 것처럼 포장·유통됨으로써 판화나 사진과 같은 복수 원본(multiple original) 예술을 폄훼하고, 예술시장을 교란하는 상황”을 타개하는 데 있으며 토론은 ‘용어와 개념을 정리’하고, ‘시중에서 거래되고 있는 원본과 복사본을 구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초점을 맞췄다. 시장 교란 사례로는 복제판화 제작업체들이 유명 화가의 원작을 사진·디지털 방식으로 복사해 ‘리미티드 에디션(limited edition)’ 등의 이름을 붙여 판매하거나 홈쇼핑 채널 및 인터넷 쇼핑몰에서 복사본을 ‘아트 에디션’ 등의 용어로 광고하는 일이 거론됐다. 참가자들은 이런 행위는 “복수 원본 작품을 제작하는 예술가뿐만 아니라 구매자들이 복사본을 원본 판화(original prints)로 잘못 알게 하여 손해를 입힐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사진 앞 왼쪽부터) 이은주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사, 윤동천 서울대 서양화과 교수, 이승종 한국현대판화가협회 총무, 이순심 한국사진학회 부회장, 임영길 한국현대판화가협회 회장

현상을 반영하는 용어의 규정

회의 1부는 복수 원본 예술과 관련한 용어 정의와 규정에 대한 논의로 구성되었다. 특히 임회장은 창작자들이 디지털 방식을 사용해 각기 원본 개념을 달리하고, 데이터가 예술의 범주로 편입되면서 모든 것이 원본(unlimited

058-059 사이트앤이슈-판화협회.indd 58 2021. 3. 23. 오후 11:40

original)으로 간주될 수 있어 원본에 대한 규정을 다시 짚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그는 "판화는 원본판화(original prints)와 복제판화(reproduction)로 나뉜다. 원본판화는 한정된 부수를 가진 복수의 원본(multiple original)이며 복제판화는 원본이 따로 존재하는 이미지를 수의 제한을 두지 않고 제작한 것"으로 그 범주를 한정했다.

'에디션 아트(Edition Art)' 및 유사 형태의 용어도 토론의 대상이었다. '에디션 아트'는 2009년 (사)한국판화사진진흥협회에서 창간한 잡지 제호였고, '아트 에디션'은 행사 〈판화·사진 아트페어 아트에디션〉의 명칭으로 사용되어왔다. 윤동천 교수는 최근 "강익중 작품 2억4000만 원 판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화가의 〈달항아리〉 '아트에디션'을 판매했다고 서술한 점을 예시로 들었다. 그는 "업체들은 작가의 서명과 넘버가 들어간 복사본을 판매하며 '아트에디션'이나 '리미티드 에디션'으로만 표기한다. 전문가가 아니면 판매 대상을 원본 판화로 알기 쉽다. 이렇게 모호한 말보다, '한정판 고급 인쇄 혹은 복제'라고 한국어로 명시하면 내용이 더 분명히 이해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에디션 아트》 편집장을 지낸 이은주 학예사는 '에디션 아트'는 현상을 기술하는 용어 정도로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원본과 복사본을 구별하는 장치들

회의 2부에서는 복수판화 제작 및 유통과 관련한 내용이 검토되었다. 일부 업체에서는 박서보, 김창열 등 유명 화가(또는 재단)와 합의해 기존에 발표된 작품을 정교한 기법으로 복제하거나, 원본에 사용된 매체와 상이한 재료로 원작을 축소 복제하여 원본과는 다른 속성의 인쇄물을 제작하기도 한다. 임 회장은 그 기법과 질료를 바꾸었다고 해도 이는 창작물이 아니기에, 복제술을 이용한 제작 행위라고 보았다. 덧붙여 그는, "우리가 판화라고 부르는 것은 '원본'만을 말한다. 만약 이러한 복사본들을 판화의 범주에 포함시킨다면 하위의 복사본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비단 구매자에게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 작가가 복제판화에 사인을 하더라도 그것이 원본과 다르다는 점을 확실하게 인지해야 한다는 것이 위원들의 견해다. 그러나 임 회장은 업체에 의해 유통되는 복사본을 구별하는 방안과는 별개로, 디지털 방식으로 이미지의 증식과 파생을 실험하는 창작자들의 활동이 위축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회의 말미에는 다음과 같은 규칙들이 제안되었다. 첫째, "작가는 자신의 작품에 관한 일체의 정보를 공개하고 보증한다."[1] 둘째, "작품의 보증서 제도를 활성화한다." 셋째, "현판·한국사진학회·한국화랑협회 등의 단체가 공동으로 판화와 사진의 건전한 유통질서의 확립을 위한 규제 범위를 제정한다." 또한 참가자들은 복제판화는 아트상품으로 취급해야 하며, 일정 가격 이상의 복사본은 원본과 사본을 구분하는 작가의 기록을 포함한 서류를 반드시 부착해야 한다는 권고안 마련에 동의했다. 이순심 부회장은 "매매를 할 때 작품에는 부가세가 붙지 않지만, 아트상품에는 부가세가 붙는다. 그러나 지금 복제본에 부가세가 붙지 않는 경우도 많다. 이는 화랑과 세금을 매기는 관의 입장이 달라 생긴 문제이기도 하다. 이에 관해서는 국세청과 함께 기준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서 그는 "원본 판화에도 작가보증서 및 화랑보증서를 함께 붙이고, 복제판화도 어떤 종이에 몇 장의 복사본을 제작했는지 명시할 것"을 권했다. 이 학예사도 "마스터가 작가의 감독하에 판화를 찍기도 하는데, 그 제작 정보들이 제대로 남아있지 않은 경우도 있다. 작품을 생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창작자가 서류를 꼼꼼히 남기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이는 향후 연구 가치를 높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외에 현장에서는 작가보증서와는 별도로 판화의 넘버링 옆에 원본(Original, Org. 등) 표기를 해서 이것이 없으면 복사본으로 취급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회의는 짧은 시간, 그리고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최소한의 인원으로 진행됐지만, 그동안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던 문제를 다시 수면으로 올리는 장이 되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이번 회의를 계기로 판화 이론 및 범주의 정의를 다시 설정하고, 작가와 협회, 화랑, 업체가 참여해 다수가 합의하는 올바른 시스템 마련의 물꼬를 틀 것이란 기대가 크다.

조현아 기자

1 위원들은 김구림이 저술한 《판화 Collection》(2007, 서문당) p.91에 실린 〈뉴욕 주 판화판매 규제법〉을 참고해 설명했다.

058-059 사이트앤이슈-판화협회.indd 59 2021. 3. 23. 오후 11:40